

1. 세부 지원내용

<과제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은 기술개발+실증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품목과 건설특화 품목의 컨소시엄 구성 형태가 다르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 일반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 ** 건설 특화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1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지원목적

- 50인 미만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지원내용

- (R&D) 50인 미만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산업 안전센서, 웨어러블 장비, 모니터링 제품, 로봇 개발, 각종 안전 솔루션 등
- (실증) 도입기업(50인 미만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Test-Bed로 활용

지원규모 : '26년 22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유형 및 분야 : 품목지정 (품목 내 자유공모)

- 산재발생률이 높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주요 사고 발생원인 해결을 위한 4개 품목* (상세 내용 [별첨1] 참조)

* ① 작업자 행동 ② 위험기계·기구 관리 ③ 화재·폭발·누출·질식 해결 ④ AI기반 점검·진단 플랫폼

○ 세부 품목 구분

- 일반 품목 : 전체 51개 품목 중 건설특화 품목을 제외한 44개 품목
- 건설특화 품목 : 13, 14, 26, 27, 28, 39, 51 총 7개 품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공사 현장의 증빙 기준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을 확인할수 있어야 함.

- 50억 미만 공사 현장을 실증 대상으로 신청 할 경우 우선지원*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지표 점수 최고점 부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구분		지원 대상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①도입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②도입기업(필수)		
위탁연구개발기관(선택)		산업 현장 안전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② 건설 특화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1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구분		지원 대상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①도입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건설 현장을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건설사업자 ※ 실증 현장은 최대 300억 미만 공사 현장 2곳 이상	
	②도입기업(선택)		
위탁연구개발기관(선택)		산업 현장 안전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시 공급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 현장 2개 이상 필수**
- 공동 연구개발기관 1개 기업이 적용 현장 2개를 보유 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가능 (단, 2개 현장은 계약 내용의 발주처가 다르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경우 컨소시엄 참여가능(컨소시엄 협약서 필수 제출)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최대 2년, 6.6억원 이내	25% 이상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총 연구개발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26.9.1~`26.12.31 (4개월)	`27.1.1~`27.12.31 (12개월)	`28.1.1~`28.8.31 (8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개발기간으로 신청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10	3.6	33	36.6	146.6
2차년도	330	11	99	110	440
3차년도	220	7.4	66	73.4	293.4
합 계	660	22	198	220	88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	2.5%	22.5%	25%	100%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다. 비목별 산정 기준, 1) 직접비, 인건비,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 운영비 활용·계획(붙임2)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 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분	기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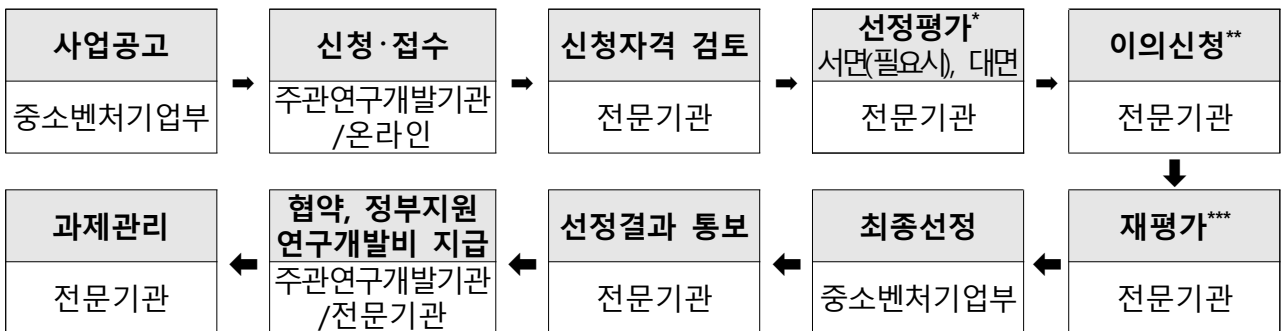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신청자격 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text{서면평가 평점} = \frac{\text{서면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서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40)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5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10
사업성(20)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기술개발역량 (20)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15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파급효과(15)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 연구개발계획서 확인을 위한 대면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 내용은 참고 참조

[대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기술성(40)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 지원필요성	15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20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성(20)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기술개발 부합성(10)	기술개발 부합성	· 산재예방 안전장비 및 솔루션 보급계획의 적정성	5
		· 기술개발 결과물의 산재예방 효과 및 산재발생 감소효과 구체성	5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25)	연구개발역량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15
	연구윤리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 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10
자금집행 계획(5)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하고, 이의신청 결과 ‘可’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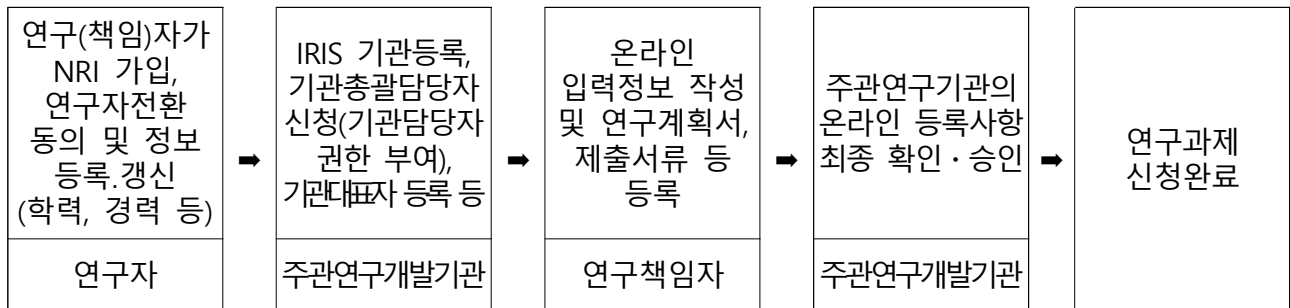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6년 6월 15일(월) ~ 7월 2일(목),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 '26.9.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②	중소기업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③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총괄카드 - 일반품목 신청시 상시 근로자수 증빙자료 필수 제출 * [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정보 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조회방법 [별첨2] 참조 * 상시근로자 수는 산재보험 기준으로 산정		○
④	공급기업-도입기업 간 컨소시엄 확약서	○	
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⑥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⑦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⑧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⑨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⑩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⑪	(도입기업) 건설 현장 증빙 서류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등 계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⑫	건설업 면허증,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 (도입기업) 건설특화품목 신청 시 기관별 1개 필수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발급한 서류		○

4. 기타사항

(필수적 성과목표) 2개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 필수 반영 필요

구 분	성과 목표명	전체 성능지표 대비 비중
산재예방 효과	사업장(또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 수준향상을 측정하는 지표 (예시) 사업장(또는 공사현장)의 위험작업 감소율	10%
실증확산	(선택) ① 또는 ② 항목 중 선택 ① 스마트안전보건장비 지원사업(고용부) 품목 또는 제품등록 ② 도입기업 외 1개 기업(또는 공사현장) 이상 결과물 보급	10%

5.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참고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 · 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상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상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업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2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